V 참여자

1 참여자 요건 등

1.1 참여자 요건

-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는 수행기관, 이하 같음)**는 **참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함

-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다른 참여자 요건이 유사한 경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함

①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21년 기준 1951년~1971년 출생자 해당

- 다만, '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결혼이민자로 F2, F5, F6 비자를 보유한 경우 참여 가능

- 여기서 미취업자란 사업 참여 당시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이거나, 참여 당시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휴업상태임을 증빙하여야 함

-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가능

- 수행기관은 참여자 선발 시 참여 희망자가 참여 당시 미취업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의로 이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함

* 고의로 취업상태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참여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반납 처리하여야함

② 수행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가.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 **'해당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판단 기준**

○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의 종사 또는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 해당 업무 관련 '경력'은 직업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취미, 봉사활동, 군복무 등 직업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나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됨.

○ 다른 부처의 유사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분야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나.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또는 서비스분야 1급 자격을 취득할 것**

다.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2급 및 단일등급의 자격을 보유할 것**

- 다만 해당 경력형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2급 및 단일등급(단, 워드프로세스 자격은 제외)과 **동등한 수준의 지식, 기술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등록자격 및 공인자격도 인정**할 수 있음

* '동등한 수준의 지식, 기술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및 단일등급 자격과 자격 응시 요건이 동등한 수준일 경우를 의미

◈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의 판단 기준**

○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공헌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의미함

○ 사회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은 제외함

- 해당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운전면허 등)
-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자격**(심리상담치료, 웃음치료 등)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풍수지리학, 취미·오락 성격이 강한 자격증 등)

라. 가에서 다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고용노동(지)청의 선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참여자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요건 완화 대상자들에 대한 적정한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수요가 많아 참여자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 내 해당 사업의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하여 사업운영이 어려운 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가·나·다목에 따른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의 예시

○ 격오지로 가·나·다목에 따른 참여자선발이 곤란하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가·나·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채용 가능

③ 자치단체가 1.1 참여자 요건 ②항 **가·나·다목에 따른 경력·자격 등을 획득하기 어려운 신산업·기술분야·4차산업혁명** 등의 전문분야에 **신규 사업**을 발굴한 경우 최**소한의 자격 또는 경력을 구비한 인력을 선발 가능**

- 최소한의 자격이란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력 또는 나목의 요건에 미치지는 못하는 자격기본법 상 국가·등록 및 공인자격 보유자를 의미하며, 최소한의 경력은 관련 분야의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

◈ '가·나목에 따른 경력·자격 등을 획득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 정부 육성지원 신직업(도시재생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에 해당하는 분야

– 단, 경력형 일자리 취지에 맞다 보기 어려운 '공인탐정'의 경우 제외

○ 융복합산업 관련 분야(예시: 6차산업혁명 자격증 보유자를 통한 농가 소득지원 컨설팅)

○ 기타 신생 분야로 기존 13개 분야를 통해 지원이 어려운 전문분야

1.2 참여자 제외요건

- 자치단체 참여 개시일(예정일 포함)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자로 선정할 수 없음(그 외 사항은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① 다음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참여 개시(예정)일 현재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가. 중복 참여 일자리가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참여)인 경우 : 해당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나. 중복 참여 일자리가 **시간제*** **또는 간헐적**** 사업인 경우 : 해당 사업과 **활동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만 활동기간이 해당사업과 동일한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시간제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주기적인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희망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② 참여 개시(예정)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여일수(주말, 공휴일, 병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포함)가 **180일 이상인 경우만 1년으로 봄**
- 단, 수행기관(자치단체가 수행기관인 경우 자치단체)이 참여자를 1차 공고한 이후에도 목표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한 경우 2차 공고부터 2호에 해당하는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총점의 20%를 감점하고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③ 참여 개시(예정)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사람 중 마지막 참여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단, 수행기관(자치단체가 수행기관인 경우 자치단체)이 참여자를 1차 공고한 이후에도 목표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한 경우 2차 공고부터 3호에 해당하는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총점의 20%를 감점하고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참조> 산정기준 예시[참여개시(예정)일이 '19.5.1.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에 따라 참여할 수 없는 경우

①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업의 종료일이 참여개시일('19.5.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참여개시일 직전 2년간 각 년도 모두 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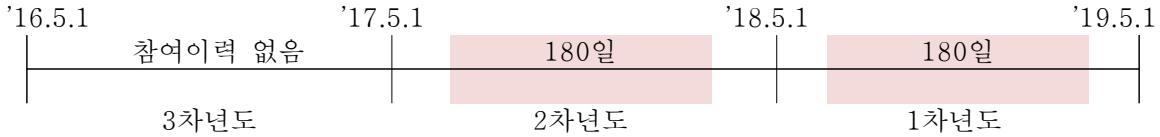

②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업의 종료일이 참여개시일(`19.5.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참여개시일 직전 3년 중 2개 년도(1차, 3차)가 각 년도 모두 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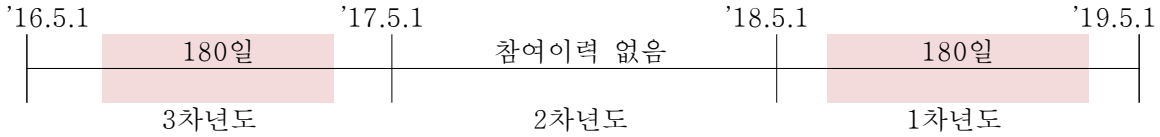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참여개시일('19.5.1)로부터 역산하여 1년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이 없고,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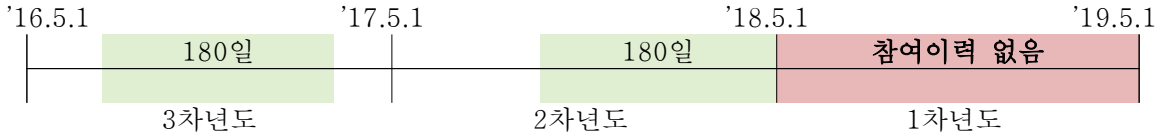

② 참여개시일 직전 3년간 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없거나 180일 미만인 연도가 2개 연도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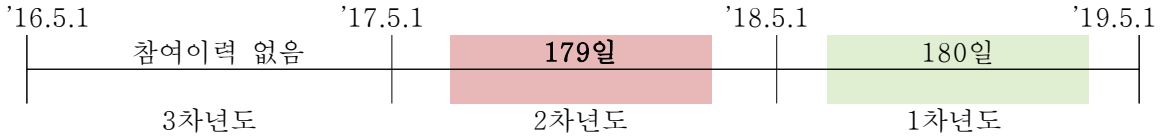

④ 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다만 수급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참여 제한의 예시

① 예시 1 : 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종료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참여 불가

② 예시 2 : 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참여 가능

③ 예시 3 : 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참여 가능

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 예정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수급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참여자의 경력, 자격 등이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적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 이 경우 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⑦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정수급자(2년간 참여 제한),

1.3 참여자 제외요건의 확인 및 조치

- 자치단체는 참여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일모아시스템'에 참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 가능

-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반복참여자가 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 중도 탈락 처리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알려 주어야 함(개시일 이후 참여 제외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활동시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참여 가능)
- 중복참여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중복참여자에게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의사 파악 후,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계속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중단 조치

2 참여 신청 및 참여자 선정

2.1 참여 신청

- 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자의 신청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참여 신청자로부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6)와 「전문경력 기술서」(서식 8)를 제출 받아야 함

- 자치단체는 참여자를 직접 모집·선발하여야 함
- 자치단체가 위탁 등으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수행기관이 참여자 공모를 하는 경우
  - 자치단체는 관할 내 세부사업을 통합 공고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시·군·구 사업의 공모 및 홍보를 시·도에서 총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수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참여자로부터 신청분야의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입증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음

    *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

- 참여 신청접수는 접수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세부사업별 모집인원에 따라 접수 및 선발함
  - 참여 희망자는 하나의 공고 내에서 선호 순위를 정하여 세부사업별로 중복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1개의 사업만 참여시켜야 함
- 모집공고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중년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시행하여야 함

  * 워크넷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페이지의 적극 활용을 권고

  - 수행기관은 인근 고용센터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참여자에 대한 상담·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참여자 신청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는 모집공고 내용이 게시되어야 하며, 접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함
  - 단, 결원 및 모집미달 시 재공고 기간은 5일 이상, 접수기간은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2.2 참여자 선정

- 자치단체는 신청 마감일 후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비

대상자에게는 대기 순번을 부여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참여자에게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활동수당 등 지원금의 환수,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